

선거관리규정(안)

2026. 1. 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촌교회의 정관 제18조에서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을 규정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헌법의 정치편에 기재된 향존직 직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평촌교회(이하 "본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하 "향존직") 선거를 교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역자를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선거권"이란 본교회의 향존직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② "피선거권"이란 본교회의 향존직 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
- ③ "무효기간"이란 권징에 의하여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간으로, 이명증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승인을 거친 자는 전교회와 병합하여 기간 산정하며, 이명증서가 없는 경우는 본교회 교적부 등록과 당회 승인된 일자, 이후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의 원활한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한시 조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선관위는 선거시행일 60일 이전에 구성하여, 이를 공고하며,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시행계획을 선거시행일 30일전까지 공람공고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최종차수의 선거일로부터 1주일 후에 피택자 최종공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 ③ 선관위가 본조 제2항에 따라 공람공고한 선거시행계획은 14일간 선거권자 피선거권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정당한 의견일 경우 선관위는 당회에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며,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이를 확정하여 선거를 시행한다.
- ④ 선관위는 당회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하되, 당회의 위촉을 받아 임명한다.

제4조(선거절차의 위임)

- ① 선거시행세칙 등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선관위를 거쳐 당회 결의로 확정한다.
- ② 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최종권한은 당회에 있으며, 공동의회에 보고 한다.

제2장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자격

제5조 (선거권을 가지는 자)

- ① 본교회 정관 교적부에 따른 등록세례교인(입교인 포함, 이하 같다)중 만18세 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② 등록세례교인이란 당해 선거 공고일 전까지 본교회 교적부에 따라 등록교구에 편성된 자를 말한다.

제6조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

① 향존직 선거의 피선거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예배와 헌금 및 봉사 등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는 자여야 한다.

② 피선거권의 대상이 되는 자는 본 규정 제5조의 선거권을 가지고, 본조 제1항에 부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로는 무흠 등록세례교인으로서 본교회 교적부 등록후, 만7년을 경과하고, 선거시행계획공고일 기준 만40세 이상의 향존직분을 받은 자라야 하며, 협동장로는 협동직 임명후 만5년이 경과한 자여야 한다. 단, 선거시행계획공고일 기준 1년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안수집사와 권사는 무흠 등록세례교인으로서, 본교회 교적부 등록후 만5년을 경과하고, 선거시행계획공고일 기준 만35세 이상인 자라야 하며, 협동집사와 협동권사는 임명후 만3년이 경과한 자여야 한다. 단, 선거시행계획공고일 기준 1년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있는 자는 제외한다.

③ 본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거시행계획공고로서 교회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당회의 결의로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후보자 선정 방법과 절차

제7조 (선거 시기)

① 향존직 선거는 매3년 마다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4월말 또는 10월말까지 선거시행계획공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각 시행계획공고일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 전까지 선거가 개시되어야 한다.

② 당회는 필요할 경우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당회는 노회로부터 선출인원 승인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 (선거 공고)

당회는 선거시행일 30일전까지 선거시행일, 선출인원 등 선거와 투표에 관한 사항을 선거시행계획공고로 후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피선거인 명부 작성 및 배포)

① 선관위는 후보예비자 명부를 비치하여, 선거권자들이나 피선거권 후보자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열람을 거쳐 확정된 명부를 선거시행일 2주전까지 선거권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피선거인 명부의 게재 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로후보는 향존직 임직한 일자순으로 기재하되, 임직일자가 동일할 경우 본교회 교적부 등록순으로 기재한다.

2. 안수집사와 권사후보는 본교회 교적부 등록순으로 기재하되 등록일자가 동일할 경우 나이 많은 순서로 기재한다.

3. 취임대상 향존직은 협동직으로 임명된 일자순으로 기재하되, 일자가 동일할 경우 본교

회 교적부 등록순으로 기재한다.

제10조 (피선거인 명부 기재사항)

- ① 피선거인 명부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교적부에 등록된 생년월일, 봉사이력 등을 기재한다.
- ② 봉사이력은 장로후보는 최근 10년, 안수집사·권사 후보는 최근 5년의 봉사사역제목과 봉사기간을 기재하되, 교회요람 및 사역조직 순서로 기재하며, 위원회 내에서 사역내용만 변경될 경우 1회만 기재한다.
- ③ 봉사이력은 교적부에 기록되어있는 내용대로 기재하되, 교적부에 누락되어 있는 봉사이력은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나 해당 위원장이 확인하는 사항만을 기재한다.

제11조 (복귀하는 항존직에 대한 조치)

- ① 1년 이상 업무 등 공식적인 사유로 출타하였던 자로서, 당회에 신고하여 휴직 인정을 받은 자는 복귀시 당회 의결을 통하여 즉시 시무직을 회복한다.
- ② 사전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총회헌법 절차에 따라 복권된 후 전입과 협동 직분을 거쳐야 제6조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2조 (후보자 선정 방법)

- ① 장로후보는 본규정 제6조에 따른 대상자를 후보로 하되, 자진 사퇴의사를 밝힌 자는 제외하며, 대상자가 상당할 경우, 당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 수를 제한하여 추천하고 후보자로 확정할 수 있다.
- ② 안수집사와 권사후보는 본규정 제6조에 따른 대상자를 후보로 하되, 각 교구별로교구장이 우선 추천하고,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당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출 예정인원의 2배수를 후보자로 확정하며, 교구에서 추천받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당회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추천한 자는 후보자로 포함한다.
- ③ 본조 제1.2항에 따라 확정된 후보자를 선관위에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에 상정한다.

제4장 투표 및 개표

제13조 (투표의 원칙 및 방법)

- ① 투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되, 세부절차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 ② 선거권자는 자신의 투표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
- ③ 투표결과 당초 선출 예정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득표 순으로 잔여 선출대상 인원의 1.5배수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2차 투표를 진행한다.
- ④ 2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선출 예정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득표 순으로 잔여 선출대상 인원의 1.5배수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3차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장로 선거는 필요시 여성할당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선거운동의 금지 및 당회의 권한)

- ① 선거 공고일로부터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본교회의 항존직 선거를 위한 일체의 선거유세 및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②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른 후보에 관하여 사실 및 허위사실을 발설하거나 유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제반 행위를 금지한다.
- ③ 특정인을 위한 찬반 목적으로 SNS등 통신기기를 이용한 선거 지원 등의 행위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④ 당회는 위의 본조 제1,2,3 항의 행위가 발생됨을 인지할 경우 해당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후보는 사실확인이 될 경우 후보에서 배제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 (개표)

- ① 개표 방법은 인력 또는 전산 계수 방법중 선택하여 선관위에서 정하고 당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 ② 투표인원은 선거전 명확히 확정되어야 하며, 선관위원장은 이를 확인하여 공표하고 선거에 임하여야 하며, 개표하기전 선거인원과 투표인원을 비교하여 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표에 임하여야 한다.
- ③ 기표가 불명확한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유무효를 결정하되, 투표한 용지는 결과 보고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개표 결과의 공표)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당회에 보고하고 당선자 명단과 차기 투표의 후보자 명단을 교회 홈페이지나 후보에 게재한다.

제17조 (개표 결과에 대한 이의)

- ① 투표 결과의 정확성에 대하여, 후보자가 재검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투표 3일 내에 재검표를 하여야 하며, 그 경위와 재검표 결과를 다음 공동의회 전까지 당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② 재검표 결과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지체없이 공표한다.

제18조 (투표용지의 보관) 투표한 투표용지는 개표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제5장 피택자 확정 및 임직

제19조 (피택자 선정 기준)

- ① 장로는 총 투표수의 3분의2 이상 득표한 자로 한다.
- ② 안수집사, 권사는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한 자로 한다.
- ③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결과 득표자가 선출예정 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④ 동일한 득표로 선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⑤ 피택자가 임직되기 전, 제14조에 의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당회는 청문을 거쳐, 해당 피택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장로 및 집사, 권사의 임직 조건)

- ① 장로 피택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임직한다.
- ② 안수집사 및 권사로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항존직 교육을 이수하고 임직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항존직 선거 부터 적용하기로 한다.